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 align="center">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시행세칙</p> <p align="center">2011년 9월 1일 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3년 11월 6일 개정 2013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전부개정 2019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10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p>	<p align="center">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시행세칙</p> <p align="center">2011년 9월 1일 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12년 9월 1일 개정 2013년 11월 6일 개정 2013년 12월 23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전부개정 2019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10월 1일 일부개정 <u>2023년 6월 1일 일부개정</u>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p>	
<p>제33조(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① 대학원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튜터링 프로그램의 대상과목은 변호사시험 기본과목의 일부로 하며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 I, 헌법 II 2. 민법 I, 민법 II, 민법 III, 민법 IV 3. 형법 I, 형법 II 4. 회사법 	<p>제33조(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① 대학원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튜터링 프로그램의 대상과목은 <u>원칙적으로 수강인원 30명 이상인 과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개정 2023. 06. 01></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변호사시험 필수과목</u> <u>2. 답안 첨삭지도, 기록형 학습, 사례형 풀이 방법론, 과제 수행방법 지도 등이 필요한 과목</u> 	<p>자구 조정</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5. 행정법 I, 행정법 II 6.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법(하) 7. 형사소송법</p> <p>③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민법, 형법 교과목을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부비법학전공자의 수학능력 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대학원은 개강 이전에 튜터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하며 학기 초 학생들로부터 튜터링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받아 튜터링 학습반을 확정한다.</p>	<p>③ 제2항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 담당교수가 1차 수강신청 완료 후 튜터링을 요청하면 튜터를 배정하며, 튜터링 요청 교과목이 튜터링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강인원 수를 기준으로 튜터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06. 01></p> <p>④ 삭제<2023.06.01></p>	
<p>제34조(튜터의 자격, 선발) ① 튜터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p> <p>1. 재학생 중 전 학년 평균 평점이 B+ 이상이고 담당할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p> <p>2. 휴학생, 졸업생 중 학업성적이 튜터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생</p> <p>② 튜터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한다.</p> <p>③ 튜터에게는 대학원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p>	<p>제34조(튜터의 자격, 선발) ① 튜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개강 초 담당교수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배정한다. <개정 2023. 06. 01></p> <p>1. <u>대학원</u> 재학생 중 전 학년 평균 평점이 B+ 이상이고 담당할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p> <p>2. <u>대학원</u> 휴학생, 졸업생 중 학업성적이 튜터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생</p> <p>3. <u>일반대학원생 중 1, 2호에 준하는 학생</u></p> <p>② 튜터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한다.</p> <p>③ 튜터에게는 대학원장 <u>명</u>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u>지도비</u>를 지급한다. <개정 2023. 06. 01></p>	<p>자구조정</p> <p>3호 신설</p>
<p>제35조(튜터링 학습반의 운영) ① 각 학습반은 각 교과목 단위로 7인 내외의 학생을 한 그룹으로 하여 한 개 또는 여러</p>	<p>제35조(튜터링 학습반의 운영) ① <u>튜터링</u> 학습반은 각 교과목 단위로 <u>하되, 튜터 1인당 수강인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는것</u></p>	<p>자구조정</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개로 구성한다.</p> <p>②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학기 개강시부터 종강시까지로 한다.</p> <p>③ 튜터는 매 학기 중간시험 직후, 기말시험 직후에 각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튜터는 매학기 종료 후 소정의 기간 안에 행정실에 해당 튜터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p>	<p><u>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06. 01></u></p> <p>②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학기 개강시부터 종강시까지로 한다.</p> <p>③ 튜터는 매 학기 중간시험 직후, 기말시험 직후에 각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튜터는 매학기 종료 후 소정의 기간 안에 행정실에 해당 튜터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p>	
<p><u><신 설></u></p>	<p><u>부 칙 (2023.6.1)</u></p> <p><u>이 개정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제34조,제35조 개정)</u></p>	<p>부칙 신설</p>